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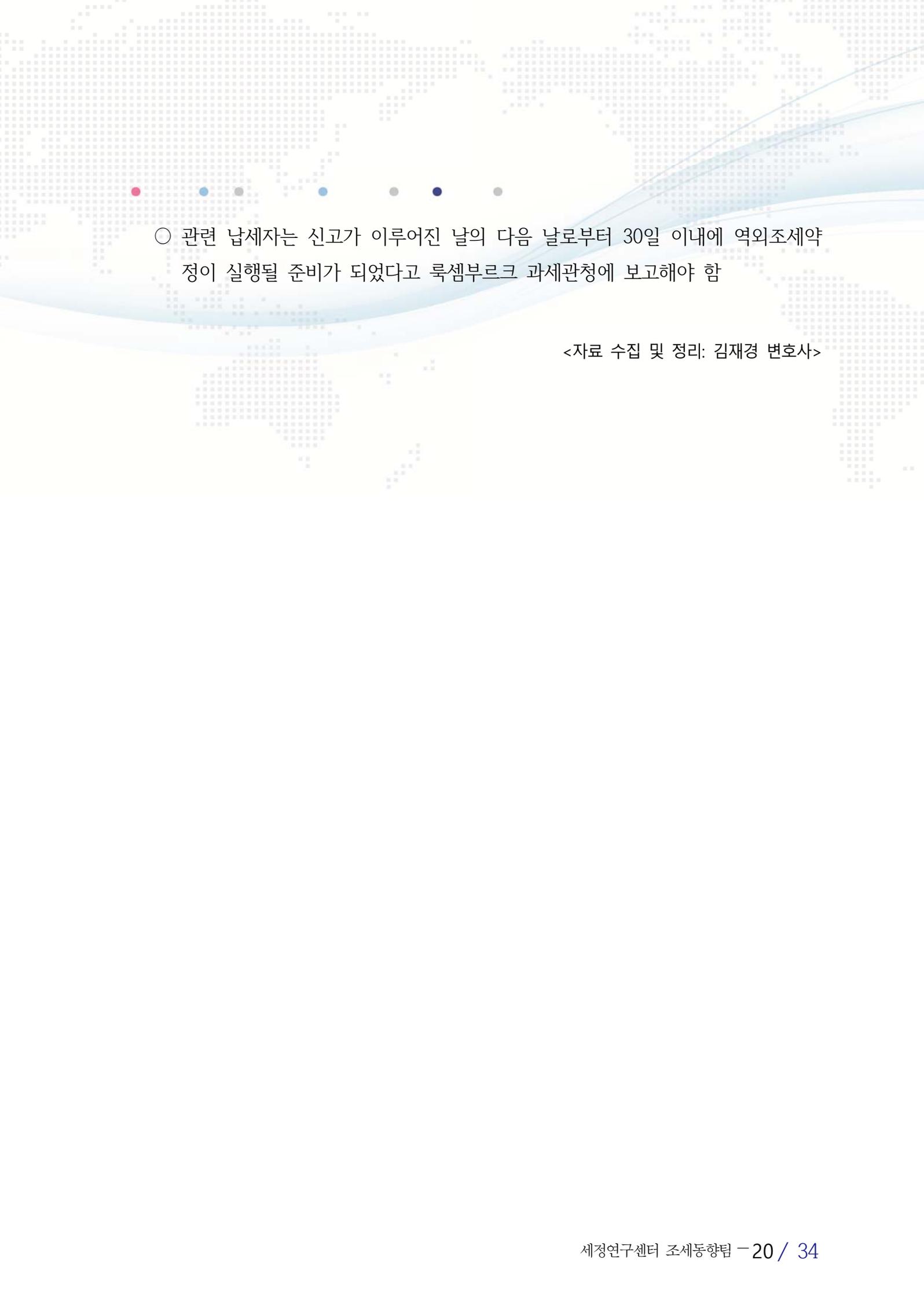
○ 룩셈부르크 - 강제적 보고 규정 법안 관보 게재

- 룩셈부르크 의회는 2020년 3월 21일 조세분야의 강제적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법 (no. 7465)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2020년 3월 26일 관보에 게재됨³⁴⁾
 - 이 법은 강제적 보고 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지침(Directive 2018/822)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됨³⁵⁾
 - 역외조세약정(Les Dispositifs Transfrontières)과 관련된 정보 보고의무, 통신판매, 개인 정보 보호,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, 조사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
- 법안은 초안과 달리 직업상 비밀 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경우 일정한 정보를 다른 중개인 및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함
 -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감사에게도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사는 강제적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
 - 강제적 보고의무의 면제는 룩셈부르크 법이 규율하는 직업적 범위 내의 행동에만 적용됨
 - 중개인은 역외조세약정이 실행될 준비가 되었다고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역외조세약정의 첫 번째 단계의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역외조세약정과 관련된 다른 중개인에게 보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다른 중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납세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함

34) Journal officiel du Grand-Duché de Luxembourg, <http://www.legilux.lu/eli/etat/leg/loi/2020/03/25/a192/jo>, 검색일자 : 2020. 4. 20.

35) Luxembourg - Directive on mandatory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field of taxation in relation to reportable cross-border arrangements - bill adopted by parliament and gazetted(31 March 2020), News IBFD

- 
- 관련 납세자는 신고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역외조세약정이 실행될 준비가 되었다고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김재경 변호사>